
가상현실(VR) 콘텐츠 제작 제안요청서

2020. 01. 15



삼육대학교
SAHMYOOK UNIVERSITY

목 차

I. 사업안내

1. 개요	3
2. 사업 추진 배경	3
3. 제안 자격	3
4. 사업 내용	4

II. 용역수행지침

1. 개발 내용 및 일반 지침	6
2. 세부지침	7
3. 제작물 등에 대한 관리	7
4. 계약자의 책무	8
5. 콘텐츠 설치	8
6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	8
7. 계약종료 후 조치	9
8. 보안사항	9
9. 기타	9

III. 사업자 선정

1. 사업자 선정절차	11
2.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	11
3. 사업자 선정 방법	11
4. 제안서 평가와 협상, 낙찰자 결정	11

IV. 제안 안내

1. 일반 사항	13
2. 제안시 전제조건	13

I 사업 안내

1. 개요

- 1) 사업명 : ICT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가상현실(VR) 콘텐츠 제작
- 2) 사업기간 : 2020년 2월까지(상기 일정은 본 사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※ 하자보수기간 :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
- 3) 입찰방식 : 제한경쟁입찰
- 4) 사업자선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- 5) 사업예산 : 25,200,000원(일금 이천오백이십만원정, VAT포함)

2. 사업 추진 배경

- 1)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역량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주목받고 있음
- 2) SU-Innovation Academy에서 제작한 SU-CODING KIT의 조립방법을 우수한 품질의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핵심 능력으로 부상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며, 교수들이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
- 3) 따라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용 VR 콘텐츠 제작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제안 자격

입찰공고에서 공시한 사업자

4. 사업내용

가. 콘텐츠 제작

- 1) 내용 : 4차 산업혁명 중심의 VR 기술을 활용하여 SU-CODING KIT의 조립방법 및 조립 과정을 VR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콘텐츠 제작
- 2) 콘텐츠 내용은 소프트웨어 코딩 기초자와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우는 수준의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
- 3) 구성 : 주2회, 8~9주 분량의 콘텐츠 구성

- 4) 콘텐츠 분량 : 예제당 5~10분 내외
- 5) 영상 해상도 : 5760*2880 / 30fps 이상
- 6) 교육생이 가상현실(VR) 기계장비(H.M.D 등) 사용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 1편 제작
 - ※ 별도의 영상 구동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나, 교육생이 충분히 사전학습하고, 기능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
- 7) 체험자의 육체적,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상황을 기획
- 8) 영상콘텐츠의 속도 및 전개방식은 교육생의 어지러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기획
- 9) 제작된 영상과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 하도록 개발
- 10) 콘텐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단위로 분절하여 제작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
 - 제작된 콘텐츠 영상의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영상물 제작

나. 기타 사항

- 1) 유지보수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제출
 -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구성 부품 및 자격(내역서), 내용연수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자료 제출
 - 주요 오작동, 고장에 대한 상황별 대응 응급처치 방법
 -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의 다른 사업자가 유상유지보수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, 교육적 지원에 대한 사항
 - 유지보수 관리계획,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상유지보수 계획 및 적정 유지보수 비용 산출내역서
 - 발생 가능한 위험요서의 종류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
- 2) 기타 제안사의 아이디어, 기술, 업무지원 등의 추가 제안사항 등

1. 개발 내용 및 일반 지침

- 1) VR 콘텐츠 제작물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 및 매체 활용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
- 2) 개발업체는 계획된 개발진행 단계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 및 내용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,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
- 3) 콘텐츠 제작은 삼육대학교 교내에서 진행하며, 장비 및 인력은 해당 업체에서 공급해야 함
- 4) 콘텐츠 제작 기간 동안 PM(Project Manager)은 교내에 상주해야 하며, 필요시 개발 인력 또한 교내에 상주하여 진행해야 함
- 5) PM은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담당 교수 설계 및 기획을 담당하고, 스토리보드와 기획서를 작성하여 검수 후 개발을 진행해야 함
- 6)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수설계에 함께 참여해야 함
- 7) 개발업체는 내용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콘텐츠 내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 및 설계 전략을 수립·실천해야 함
- 8) 개발업체는 콘텐츠 영상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며 최종물을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
- 9)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, 본 사업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
- 10) 계약업체는 VR 콘텐츠 제작 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본교와 협의해 진행하되,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본교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,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- 11)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 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
- 12)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, 본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본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- 13) 콘텐츠 제작 중 발생한 저작권·초상권 등에 대한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

2. 세부 지침

- 1) 콘텐츠는 도입되어 있는 장비규격을 지원하여야 함
- 2) 개발업체는 진행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해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
- 3) 개발업체는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개발 기간 동안 제작 일정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
- 4) 개발업체는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개발 기간 동안 PM이 교내에 상주해야 함
- 5) 하자 또는 오류 발생 시 통지를 수령 또는 발행(해당되는 경우)한 후 10일 내에, 관련 콘텐츠, 기능향상수단의 대체물 또는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며, 언제 하자가 보완될지에 대한 예상일을 알리고, 상세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
- 6)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내 용	비고
1	소프트웨어 코딩 VR 교육용 콘텐츠	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제출
2	개발 콘텐츠 요약·홍보영상	
3	운영자 매뉴얼	
4	최종결과보고서	
5	기타 개발 결과물 일체	

3. 제작물 등에 대한 관리

- 1) 본 사업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삼육대학교에 귀속함
- 2) 개발업체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
- 3)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,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
- 4)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,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5)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,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
- 6)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물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(배포, 송신, 대여 등의 일체)은 본교에 귀속되며 본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

는 대여할 수 없음

- 7) 개발된 콘텐츠의 외부 누출, 무단 복사/편집,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함
- 8) 계약업체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, 저작 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, 소유권,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
- 9)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,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,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, 기타 야기되는 민·형사상의 책임도 계약업체가 져야함

4. 계약자의 책무

- 1) 과업완료 후에도 콘텐츠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수하여야 함
- 2) 우리대학은 계약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, 계약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우리대학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
- 3)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
- 4)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 대학 계약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

5. 콘텐츠 설치

- 1) 결과물인 콘텐츠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외장하드 혹은 USB는 반드시 제출되어야하며, 최초 설치 시에 정상적인 구동을 확인하여야 함

6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

- 1)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※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,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.

-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
- ※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
-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
- 실제 운영인력,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
- 기획, 연출, 촬영, 편집,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
-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
-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

2)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, 본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본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
7. 계약종료 후 조치

1) 계약 종료 후라도 하자 또는 보완 사항이 발견되어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할 시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함

8. 보안사항

- 1)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
- 2) 계약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3)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·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4)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·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
- 5) 콘텐츠 개발 시에 동반되는 개인정보보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대학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
9. 기타

1)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, 추진전략 등 본 사업관련 제안서에 의

하되 우리대학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함

- 2) 본 계약 내용과 같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시,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우리대학은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III 사업자 선정

1. 사업자 선정절차

- 1)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
 -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긴급)
 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- 2)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
 - 입찰공고 → 입찰등록(제안서 제출) 접수 → 낙찰업체선정 → 사업자협상 및 계약체결

2.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

- 1)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 참조
- 2) 제출방법
 -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(우편 접수 불가)
 -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
 -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
3. 사업자 선정 방법

-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에 의함

4. 제안서 평가와 협상, 낙찰자 결정

- 1)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 - 평가비율 : 기술평가(80%), 가격평가(20%)
 - 종합평가점수 산출 = 기술 평가점수 + 입찰가격 평가점수
- 2) 기술평가
 -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우수한 용역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, 가격제안서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함
 -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
 -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3) 가격평가
 -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
- 4) 사업자 선정
 -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 - 기술평가점수(80%)와 가격평가점수(20%)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

선정

-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
-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함
-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
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

IV 제안 안내

1. 일반 사항

- 1)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민.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2)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3)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에 대하여 삼육대학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고, 사업완료 즉시 제반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4) 제안사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해 변동 없이 계약내용의 사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삼육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삼육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,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등의 분쟁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6)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삼육대학교의 소유로 하고, 계약당사자는 삼육대학교의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(기능개선, 재개발, 유지보수등)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안된다.
- 7)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삼육대학교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육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8)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.
- 9)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10)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11)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12)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(단,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.)

2. 제안시 전제조건

- 1)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.제도의 변경,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, 취소될 수 있다. 이 경우,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한

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 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.

- 2)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,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분쟁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3)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(공동소유를 포함)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(기능개선, 재 재발, 유지보수 등)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.
- 4)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,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사(社)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.

끝.

2020. 01. 15



삼육대학교
SAHMYOOK UNIVERSITY